

해빙기 가축 매몰지 안전 점검으로 환경오염 가능성 사전 차단

-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강화 위해 농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 일제 점검('25.3.17~3.31) 실시
- 가축 매몰지로부터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해빙기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가축 매몰지 일제 점검(3.17.~3.31.)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매몰지 조성 이후 관리 기한 3년이 지나지 않은 '관리 대상 매몰지' 56개소*로 농식품부·환경부·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저장조 파손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등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12개소, 아프리카돼지열병 17개소, 렘피스킨 27개소

이번 점검에서 매몰지 안전 점검과 지자체(시·군·구)의 매몰지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가축 매몰지로부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 질병 발생으로 생성된 매몰지에 대한 발굴·소멸 처리 지원 사업과 가축 사체를 매몰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랜더링 시설 지원 사업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축 사체 비매몰 처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붙임 2025년 해빙기 대비 가축매몰지 정부합동 점검계획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승교 (044-201-2551)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김승래 (044-201-2561)

□ 점검 개요

- **[목적]** 해빙기 대비 가축 매몰지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정부합동(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일제점검을 통해 위해요소 관리 추진
 - * 연간 2회 정부합동 일제점검 추진 : 해빙기(3월경) 및 장마철(6월경)
- **[점검기간]** '24.3.17. ~ 3.28.(2주간)
 - * 미흡사항은 지자체를 통해 3.31~4.3(1주간) 보완토록 조치하여 개선여부 확인
- **[점검반]** 농식품부(검역본부), 환경부, 지자체 합동점검반(15개반 49명, 반별 3~4명)
- **[점검대상]** 관리대상 매몰지 56개소*
 - * 발굴금지 기간 3년(필요시 2년 연장 가능)이 경과되지 않아 소멸되지 않은 관리 대상

합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인천	충남	충북
56	11	33	2	5	1	2	2

□ 주요 점검 내용

- **지자체(시·군·구) 매몰지 관리실태 점검**
 - 매몰지 자체관리 계획 및 매몰지카드 작성 여부(KAHIS 입력) 등 관리실태
 - 매몰지 주기적인 점검 및 매몰지별 책임자 지정 여부 등 운영사항
- **매몰지 안전관리 실태 확인**
 - (공통) 경고 표시판, 울타리, 매몰지 유실 여부, 배수로 정비 상태 등
 - (액비저장조 및 FRP^{섬유강화플라스틱}) 누수 및 파손여부 등
 - (잔존물 퇴비화) 매몰지에 적재된 잔존물 방수·배수 조치상태 등
- 매몰지 및 주변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시설 및 제도 개선점 발굴**

□ 조치 계획

- 반복 미흡사항 및 제도 개선점을 발굴하여 『매몰지 사후관리 지침』 개정시 반영
- 정부합동 점검 완료 후 결과를 환경부 및 지자체에 통보